제264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17.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6월 17일

수석전문위원 이 한 진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19 - 36

나. 제 안 자: 최동철 의원 외 7명

다. 제안일자: 2019년 5월 31일

라. 회부일자: 2019년 6월 11일

2. 제안이유

안건의 발생 빈도가 적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유사기능 위원회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근거 조항 명시(안 제1조)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통합 운영(안 제2조)

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분(안 제3조)

라. 위원의 위촉해제 신설(안 제5조의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19. 6. 3. ~ 6. 10. 결과: 의견 없음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붙임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을 위하여 실효성이 미약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조에서 지역보건법 및 국민생활증진법의 근거 조항을 밝혔고

○ 안 제2조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고

○ 안 제3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하였으며,

○ 안 제5조의1에서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폐지하였고,

○ 부칙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이 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음

○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안건의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정비하여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민건강증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건강생활의 실천운동과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의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법 제3조와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는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법령 1부.

붙임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